

프랑스의 2008년 민사상 시효법 개정에 관한 고찰

I. 들어가며

지난 2004년 프랑스 민법전은 20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주년에 앞서 2003년 프랑스 민법 학자들은 프랑스 민법전의 현대화를 위한 대대적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첫 개정으로 2008년 프랑스 민법전 제20편이 개정되었다. 즉, 민사 분야의 시효를 개정하는 2008년 6월 17일 제2008-561호 법률(La loi n° 2008-561 portant réforme de la prescription en matière civile)¹⁾에 의하여, 구 민법전 제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樣態(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의 제20편 「시효와 점유(De la prescription et de la possession)」가 제20편 「소멸시효(De la prescription extinctive)」와 제21편 「점유와 취득시효(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로 나뉘어 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과 취득시효관련 규정들의 형식적인 구별이다.²⁾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민사상 시효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개정된 시효관련 법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시효법 개정 이유³⁾

모든 규칙과 법을 지배함으로써 법의 근본 원칙을 구성하며, 법률관계 안정에 대담하고 있는 프랑스의 민사상 시효와 관련된 법률들은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의 결여를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주

1) Journal Officiel 18 Juin 2008, p. 9856.

2) 그러나 이 구별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명확한 절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제20편의 35개의 조항 중 28개의 조항이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에도 적용하게 된다(민법 제2259조 참조).

3) Jean-Jacques HYEST, PROPOSITION DE LOI portant réforme de la prescription en matière civile, no. 432 SÉNAT(2006-2007) ; Laurent BÉTEILLE, PROPOSITION DE LOI portant réforme de la prescription en matière civile, no. 83, SÉNAT(2007-2008).

시효법 개정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시효기간이다. 파기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정 전 법률의 시효기간(소멸시효)은 1개월부터 30년까지 250개 이상의 다양한 시효기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간은 기간계산의 방법(특히 변동하는 기산점으로 인하여)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구 민사상 시효 규정들은 현 사법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멸시효의 보통법 기간인 30년은 점점 가속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시효 보통법의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럽국가들과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개정 이유이다.

Ⅲ. 시효법 개정 내용

개정 시효법 편제를 보면, 민법 제3권 제20편 「소멸시효」와 제21편 「점유와 취득시효」로 나뉜다. 제20편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제2장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제3장 「소멸시효의 진행」, 그리고 제4장 「소멸시효의 요건」). 제21편은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으로서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 「총칙」, 제

2장 「취득시효」 및 제3장 「점유보호」). 2008년 민사상 시효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련되어 있다.

1.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법상 시효기간의 단축과 시효의 수(數)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2223조의 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의 복잡성이 모두 해소된 것만은 아니다.⁴⁾ 시효기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 시효법의 보통법상 시효기간을 인적 소권 및 물적 소권에 대하여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반면(구 민법 제2262조), 개정 법률은 부동산 물적 소권에 대하여 30년, 인적 또는 동산 소권에 대해서는 5년을 보통법상 시효기간으로 확정하였다.

보통법상 시효기간 이외의 기간 변경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전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몇몇 단기시효의 기간은 단순화를 조건으로 하여 계속 유지된다. 예를 들어, 개정 전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은 점유자가 선의이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 관할 항소법원이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었다(구 민법 제2265조). 이는 부동산 단기 취득시효에서 오직 10년의 기간만을 규정하기

각주

4) 민법 제2223조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특별 조항들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의 복잡성은 매우 넓게 존재한다.

위하여, 소유자의 소재지에 근거하는 구별을 삭제한 것이다(민법 제2272조 제2항).

둘째, 기간 단축의 경우, 예를 들어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원조할 능력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책임소권은 10년의 기간에서 5년의 보통법 기간으로 단축된다(구 민법 제2270조의 1 제1항 폐지). 그리고 계약 책임과 계약의 책임을 구별하는 것 없이, 신체 손해배상으로서 10년 단일의 기간은 민사책임소권에 관한 시효를 위해 규정되었다(민법 제2226조 제1항). 그러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또는 성적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20년의 시효기간이 유지된다(민법 제2226조 제2항).

셋째, 관례에 의하여 생성된 법리가 개정법에 도입되었다. 즉,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은 이미 완성된 시효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민법 제2222조 제1항), 시효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새로운 기간은 신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진행되며, 전기간은 구 법률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민법 제2222조 제2항).

2. 시효의 진행

시효의 진행과 관련된 구 민법 제20편 제4장

을 완전히 재편성하여, 현행 민법 제20편 제3장에 3개의 절(시효진행, 시효기산점의 이월과 정지사유 및 시효중지사유)로 구성하였다. 이는 시효 진행과 관련된 규정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다.

우선, 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관례의 법리를 명문화 하였다(민법 제2224조).⁵⁾ 둘째, 소멸시효에서 만료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기산점의 이월(report),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은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효력이 없다. 셋째, 당사자들이 교섭하는 경우 또는 법관이 심리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 시효가 정지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민법 제2238조 및 제2239조), 구 민법상 중단 효력이 있었던 재판상 소환은 법관의 확대해석으로 중단사유가 매우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었던바,⁶⁾ 이를 시효정지사유로 변경하였다(민법 제2239조). 넷째, 구 시효법하에서 변제추정에 근거하는 단기시효의 정지 이후 또는 정기적인 채무에 관한 경우, 이 단기시효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지만, 보통법상 새로운 시효로 대체되었다.⁷⁾ 개정 시효법은 이러한 시효전환을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채권

각주

5) 또한 Unidroit 원칙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Soraya Amrani-Mekki, Liberté, simplicité, efficacité, la nouvelle devise de la prescription? - A propos de la loi du 17 juin 2008, La Semaine juridique, n° 27, 7. 2008, n° 42).

6)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Ministre de la Justice, 2005, p. 174.

7) 시효법 개정안의 이유서에서는 시효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는 구 민법 제2274조를 들어 시효전환을 인정하고 있고, 이 제도의 조건은 많은 불명확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

자가 채권의 존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동안, 또는 “*contra non valentem agere non currit praescriptio*(시효는 유효하게 소추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에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해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⁸⁾를 명문화하였다(민법 제2234조).

3. 시효의 합의적 정정

시효에 관한 모든 법리는 계약자유 확대를 통하여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⁹⁾ 개정 시효법은 제20편 제4장 제3절 「시효에 관한 약정」을 규정하였다. 즉, 민법은 당사자들에게 10년 이하로 연장하거나 1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정지 또는 중지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부합계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또는 보험계약 및 소비자와 전문가와의 계약 등에서, 시효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여되지 않았다(민법 제2254조).

IV. 시효법 개정의 평가

프랑스의 민사상 시효법 개정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하여, 기존 시효법을 현대화, 단순화 및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선 2008년 법률에 의한 시효법 개정의 전반적인 평가는 현대적이고 일관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¹⁰⁾ 그러나 몇몇 경우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멸 시효부분에서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이 “권리 소지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시효 기산점이 법률보다는 당사자가 안다는 것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주관적인 고려에 따르게 된 것이라 지적¹¹⁾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시효의 만료기간에 관한 민법 제2232조는 “기산점의 이월, 시효의 정지 또는 중지”에만 관련된다. 그러나 민법 제2224조

각주

다. 또한 독일의 채무법과 유럽계약법원칙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전환제도는 시효완성을 위한 필요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일으키므로, 본 개정제안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ibid.*, p. 175).

8) Cass. 1re civ., 22 déc. 1959 : JCP 1960, II, 11494, note P. E. ; RTD civ. 1960, p. 323.

9)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Ministre de la Justice, 2005, p. 174.

10) 2008년 개정은 법률의 접근 가능성과 명료성에 관한 합헌성 요구에 대하여 부응하고 있다(Soraya Amrani-Mekki, Liberté, *op. cit.*, n° 1).

11) Laurent LEVENEUR, Réforme de la prescription: trois petits tours au Parlement et quelques questions, Contrats Concurrence Consommation n° 8, LexisNexis JurisClasseur, 8. 2008. comm. 195, p. 18.

는 기산점의 결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즉, 민법 제2224조와 제2232조의 해석에 있어서 시효 만료기간의 기산점 역시 민법 제2232조와 같은 기산점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¹²⁾

프랑스는 시효관련 제도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개정 시효법 전반에 대한 좋은 판례와 해석들을 기대해 보는 것은 우리 시효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2008년 프랑스 민사상 시효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하에는 개정 법조문을 소개한다.

V. 프랑스 민법상 시효관련 조문

제 20 편 소멸시효

제 1 장 총 칙

제2219조(신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의 불행사로 인하여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제2220조(신설) 법률이 반대의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척기간(délais de forclusion)에 본 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221조(신설) 소멸시효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2222조(신설) ① 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은 이미 완성된 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위 법률은 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그 법률 시행일에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진행된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② 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새로운 기간은 신법률이 시행 일로부터 진행한다. 단, 전기간은 구 법률이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23조(신설) 본 편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특별규정들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제 1 절 보통법의 기간과 그 기산점

제2224조(신설) 인적소권 및 동산소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5년으로 소멸된다.

제 2 절 몇몇 특별 기간과 그 기산점

제2225조(신설)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자에게 위탁된 서류의 멸실 또는 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들의 책임에 관한 소권은 그 사무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으로 소멸한다.

제2226조(신설) ① 신체손해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인한 책임소권은 그 소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직접 또는 간접 피해자가 관여된 경우, 원래의 손해 또는 가중된 손해의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소멸한다.

② 그러나 고문이나 가혹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성적 침해로 야기된 손해의 경우, 민사책임소권은 20년으로 소멸한다.

제2227조(신설) 소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단, 부동산물권에 관한 소권은 권리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0년으로 소멸한다.

제 3 장 소멸시효의 진행

제 1 절 총 칙

제2228조(신설) 시효는 시간(時)이 아닌 일(日)로 계산한다.

제2229조(신설) 시효는 기간의 최종일이 만료된 때에 완성된다.

제2230조(신설) 시효의 정지는 이미 진행된 기간을 말소시키지 않고,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

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제2231조(신설) 증지는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을 말소시키고, 이전과 같은 기간의 새로운 시효를 진행시킨다.

제2232조(신설) ① 기산점의 이월, 시효의 정지 또는 증지는 소멸시효 기간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 이상으로 초과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2226조, 제2227조, 제2233조, 제2236조, 제2241조 제1항 및 제224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적 신분상태에 관한 소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절 시효 기산점의 이월 또는 시효정지의 사유

제2233조(신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시기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1. 조건부 채권의 경우,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2. 담보책임에 관한 소권의 경우, 追奪이 발생할 때까지
3. 확정일부 채권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제2234조(신설) 시효는 법률, 합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야기되는 방해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거나 정지된다.

제2235조(신설) 시효는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후견 상태의 성년자에 대하여 진행되지 않거나 정지된다. 단, 임금의 지급 또는 정기적 지급, 정기금 연체이자, 부양료, 임료, 소작료, 임차부담금, 차용대금의 이자에 관한 변제에 관한 소권 및 일반적으로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내의 정기적 변제에 관한 소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6조(신설) 부부 및 시민연대협약에 기초한 동반자 사이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정지된다.

제2237조(신설) 한정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순수적극재산만을 승인한 한정상속인에 대하여 시효는 진행하지 않거나 정지된다.

제2238조(신설) ① 소송발생 후, 당사자가 조정 또는 화해에 의거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시

효가 정지되거나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닌 경우에는 조정 또는 화해의 1차 회합의 날부터 시효는 정지된다.

- ②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 의하거나 조정자 또는 화해자에 의하여 조정 또는 화해가 종료되었음이 선언된 날로부터 시효기간은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다시 진행된다.

제2239조(신설) ① 재판에 앞서 법관이 심리조치 요구를 받아들인 경우에도 시효는 정지된다.

- ② 전항의 심리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시효기간은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다시 진행된다.

제 3 절 시효중단 사유

제2240조(신설)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의 권리를 승인하는 경우, 그 시효기간은 중단된다.

제2241조(신설) ① 급속심리 등 재판청구는 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을 중단시킨다.

- ②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되거나 법원에의 제소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242조(신설) 재판청구에 의한 중단은 그 재판절차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2243조(신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소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한 경우, 또는 원고의 청구가 종국적으로 기각된 경우, 시효의 중단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244조(신설) 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은 강제집행행위에 의해서도 중단된다.

제2245조(신설)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최고 또는 채무자의 승인은 다른 모든 채무자 및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시킨다.

- ② 반면, 가분채권인 경우, 연대채무자의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행해진 최고 또는 그 상속인의 승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저당권부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최고 또는 승인은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를

중단시킨다.

- ③ 다른 공동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 전부에 관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사망한 채무자의 모든 상속인들에 대한 최고 또는 이 모든 상속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2246조(신설)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주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은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기간을 중단시킨다.

제 4 장 소멸시효의 요건

제 1 절 시효의 원용

제2247조(신설) 법관은 시효에 기인하는 이유(moyen)를 직권으로 보완할 수 없다.

제2248조(신설)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효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유에도 대항할 수 있다.

제2249조(신설)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진 변제는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2 절 시효의 포기

제2250조(신설) 시효는 완성된 후에만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2251조(신설) ① 시효의 포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시효의 묵시적 포기는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2252조(신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자는 단독으로 완성된 시효를 포기할 수 없다.

제2253조(신설)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 또는 시효의 완성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채무자의 포기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제 3 절 시효에 관한 약정

- 제2254조(신설) ① 시효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1년 이하로 단축되거나 10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 ②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임금의 지급 또는 정기적 지급, 정기금 연체이자, 부양료, 임료, 소작료, 임차부담금, 차용대금의 이자에 관한 변제에 관한 소권 및 일반적으로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내의 정기적 변제에 관한 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편 점유와 취득시효

제 1 장 총 칙

제2255조(구 제2228조) 점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지 또는 자신이 스스로 행사하는 권리의 향유이며, 혹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자가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256조(구 제2230조) 타인을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점유는 언제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소유자의 자격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257조(구 제2231조) 타인을 위하여 점유가 개시된 경우,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언제나 동일한 자격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 2 장 취득시효

제2258조(신설) 취득시효는 점유의 효과에 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권원을 입증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도 그에 대하여 약의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제2259조(신설) 본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2221조 및 제2222조 그리고 본 권 제20편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취득시효에 적용된다.

제 1 절 취득시효의 요건

제2260조(구 제2226조) 누구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 또는 권리를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2261조(구 제2229조)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는 중단 없이 계속적이어야 하며 평온·공연·표현점유이어야 하고, 또한 소유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점유이어야 한다.

제2262조(구 제2232조) 순수수의행위와 단순허용행위는 점유 및 시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2263조(구 제2233조) ① 폭력행위도 시효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점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시효를 성립시킬 수 있는 점유는 그 폭력행위가 중지된 때에만 개시된다.

제2264조(구 제2234조) 이전에 점유하였음을 입증한 현재의 점유자는 그 중간 기간에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65조(구 제2235조) 시효기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신의 점유에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점유의 승계는 그것이 포괄적 또는 특정적으로 이루어졌든, 영리적 또는 유상으로 이루어졌든 문제되지 않는다.

제2266조(구 제2236조) ①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자는 기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없다.
② 그러므로 정액토지임차인, 수차인, 용익권자 및 기타 소유자의 물건이나 권리를 일시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없다.

제2267조(구 제2237조) 전조에서 정하는 어떠한 권원에 의하여 물권 또는 권리를 소지하는 자의 상속인도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없다.

제2268조(구 제2238조) 그러나 제2266조 및 제2267조에서 규정한 자라도, 제3자에 기인하는

원인에 의하거나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항변에 의하여 그 점유자의 권원이 변경된 때에는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다.

제2269조(구 제2239조) 임차인, 수취인, 용익권자 및 기타 임시적 소자자로부터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원에 기하여 물건을 양수받은 자는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있다.

제2270조(구 2240조)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 점유의 원인 및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권원에 반하여 시효에 의한 취득을 할 수 없다.

제2271조(신설)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자에 의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1년 이상 그 물건의 향유를 박탈당한 경우,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제 2 절 부동산 분야에서의 취득시효

제2272조(신설) 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효기간은 30년이다.

② 그러나 선의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10년의 기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273조(구 제2267조) 형식의 흠결로 인해 무효인 권원은 10년 시효기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제2274조(구 제2268조) 선의는 항상 추정되며,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275조(구 제2269조) 선의는 취득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 3 절 동산분야에서의 취득시효

제2276조(구 제2279조) ① 동산에 관하여, 점유는 권원으로서 효력이 있다.

② 그러나 물건을 유실하거나 도난당한 자는 유실 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당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지인은 그 물건을 인도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277조(구 제2280조) ① 도품 또는 유실물의 현 점유자가 정기시장이나 상설시장, 공개매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매수한 경우, 원소유자는 점유자가 지급한 대금을 상환하여야만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 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동산이 옮겨지고 그 동산이 전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된 경우, 제2232조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는 임대인도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점유 보호

- 제2278조(구 제2282조) ① 본권을 고려함이 없이, 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장애로부터 점유는 보호된다.
- ② 점유의 보호는 소지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자 이외의 모든 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소지자에게도 인정된다.

제2279조(구 제2283조) 점유 소권은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평온하게 점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백 명 선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